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

상법 제354조, 정관 제4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, 2019년 3월 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.

이에 2019년 3월 5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 재산의 표기 및 말소 등,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15일

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, TWO IFC 13층

알보젠코리아 주식회사

대표이사 이 준 수

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

은행장 함 영 주